

# 2024년 전통시장 활성화 이벤트 사업 지원 공고

「대구광역시 남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」 제23조에 의거  
전통시장 활성화 이벤트 사업 지원 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.

2024. 7. 29.

## 대구광역시남구청장

### 1. 공고분야

(단위 : 천원)

| 연번 | 사 업 명                 | 사 업 내 용                      | 보조금 지원액 | 비 고   |
|----|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|-------|
| 1  | 전통시장 활성화<br>이벤트 사업 지원 | ○ 전통시장 경품행사 및<br>문화프로그램 등 지원 | 6,000   | 2~4개소 |

※ 신청 시장 수 및 선정결과에 따라 1,500~3,000천원으로 조정 지원 가능

### 2. 신청자격

가. 「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」 제65조에 따라 구성된 관내 전통시장 상인회

나. 지원 우선순위

- 2024년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사업 및 국, 시비 공모사업 미선정 시장
- 2024년도 주민참여예산 사업 실적이 없는 시장
- 2023년도 이벤트 활성화 사업 지원 실적이 없는 시장

### 〈제외대상〉

- 성과평가 결과 지원중단 대상으로 결정된 사업

(2) 동일단체의 유사중복사업 지원의 경우

### 3. 사업추진 기간 : 2024. 9~ 12월

### 4. 신청 및 제출서류

가. 신청기간 : 2024. 7. 29. ~ 8. 13.(15일간) 근무시간 내 접수

나. 접수장소 : 남구청(경제일자리과)

다. 신청서류

① 지원신청서 1부    ② 단체소개서 1부

③ 사업계획서(세부사업계획서 포함) 1부

④ 상인회등록증, 정관(회칙) 등 각 1부

☞ 대구광역시 남구 홈페이지(<http://nam.daegu.kr>)에서 다운받아 사용

라. 신청방법 : 직접 또는 우편제출(2024.8.13.(화) 18:00 도착분까지 유효)

마. 문의장소 : 대구광역시 남구청 경제일자리과(☎ 053-664-2192)

### 5. 심사 및 통보

가. 대구광역시 남구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심의 · 결정

나. 심사 기준

- 전년도 보조금 집행 시 사업계획서 및 회계처리 세부기준 준수 여부
- 사업의 적합성, 파급성, 보조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
- 상인참여도, 마케팅 연계성 지속 가능성
- 매출증진 기여도 및 파급효과 등

다. 결과 통보 : 개별 통보

### 6. 지원범위

가. 사업비 지원을 원칙으로 하며 시설비, 자산취득비, 통신시설 설치비 등 자본적 경비는 제외한다.

나. 사업별 자부담비율을 일정부분 확보할 수 있다.

## 7. 보조금 지급 및 사업평가, 정산

- 가. 지원 결정된 금액을 보조사업자 교부 신청 → 검토 후 보조금 지급
- 나. 보조금결제전용카드 발급 및 보조금관리시스템을 통한 집행, 정산 관리
- 다. 사업종료 시 사업추진 결과보고서 및 정산보고서 제출
- 라. 사업주관부서에서 정산검사(회계기준 준수여부) 및 사업실적 평가 실시
- 마. 종합평가결과는 다음연도 보조금지원에 반영

## 8. 유의사항

- 가. 신청한 제반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.
- 나. 대구광역시 남구청으로부터 지원을 받은 후 사업추진이 미진하거나 사업 완료가 불가능하다고 인정 될 시 사업비 전액을 철회합니다.
- 다. 사업계획서의 소요사업비 산출내역, 비용지원이 결정된 후 구체적인 지출 및 정산 방법 등은 우리 구에서 정한 별도기준을 따라야 합니다.
  - ※ 특히 보조금전용카드, 지출서식, 지출증빙자료 예산집행 처리 기준 준수
- 라. 아래와 같은 경우에 해당 될 경우 기 지원된 사업비는 회수 조치합니다.
  - 사업비를 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지원조건을 위반하였을 때
  - 법령 또는 조례를 위반하였을 때
  -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를 지원받았을 때
  - 사업추진이 미진하거나 사업완료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시
- 마. 법령위반 등에 대한 처분
  - 법령 위반 등에 따라 보조금 교부 결정을 취소한 지방보조금 사업자에게는 다른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5년의 범위 내에서 제한
  -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와 그 사실을 알면서 지방보조금을 교부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
  - 법령,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, 법령에 따른 자치단체장의 처분에 대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위반하여 다른 용도에 사용한 보조 사업자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
  - 자치단체장의 승인 없이 사업계획 또는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

거나, 임의로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 또는 중단·폐지, 자치단체장의 보조사업 수행  
정지명령을 위반, 보조사업 실적보고서를 거짓으로 작성 제출 등의 행위를 한 보조  
사업자에 대해서는 각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

· 거짓 신청으로 보조금을 교부받는 등 벌칙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지방보조사업  
법인의 대표자, 또는 대리인, 사용인, 종업원이 그 업무를 게을리한 경우에는 해  
당 벌금형 부과